

댐 특위활동 중간보고

1. 목 적

- 우리군 관내 대형댐 건설로 인하여 화순군의 자원 손실과 지역주민들의 댐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대책을 수립하고 댐피해 관련 기관단체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,
- 댐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.

2. 설치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

3. 조사대상

- 관내 대형 관리기관 및 대형댐으로 인한 피해주민

4. 피해사항

댐 건설에 따른 안개 피해

- 안개로 인한 호흡기 질환은 댐 주변 주민들의 전반적인 사항임
- 과수의 낙과가 심하며 개화기실 일조량 감소로 결실이 저조함.
- 콩의 경우 수확량이 극히 저조함.

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

- 다목적 댐 건설로 관광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청사진을 제시해놓고 상수원으로 지정함.
- 수변지역을 지정해 물이용 부담금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환경부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불신풍조가 만연함.

댐 주변 주민지원 사업의 개선사항

- 광주광역시 일방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활성화단, 무공해 세계 지원, 망향각 건립등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우리군과 협의하여 추진키로 함.

- 망향각을 건설하여 청원경찰들의 경비 초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
- 2001년 댐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비 2억 6,900만원 책정
- 화순은천의 하수방류 수질이 기준허용치 이내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안에 대하여 환경부에 환경영향 재평가후 그 결과에 따라 생물학적 정화장치를 추가로 기처 방류기로 추진

□ 향후 추진사항

- 댐 주변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키는데 힘을 모아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함.
- 화순은천 환경영향 재평가를 위한 용역추진
- 생물학적 정화처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 모색
- 상위법령에는 어긋나지만 댐 편입토지에 대한 종합 토지세를 부과를 추진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

5. 댐특위 연기 사유

- 가. '99. 10. 26 화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2000년 10월 25일까지 1년간 댐피해조사 및 관련기관 방문등 피해보상에 관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본 특위를 결성하여 경기도 양평군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주민합동 현지조사등 댐 주변지역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댐 관련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토록 협의하였음.
- 나. 환경부의 영산강 대권역 불관리 대책으로 수변구역 지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댐 피해 최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화순은천의 방류수 처리에 따른 환경영향 재평가 추진과 현재 상위 법령에는 어긋나지만 댐 편입토지의 종토세 부과추진등 못다한 조사활동을 위함.
- 다. 환경부의 수변구역 지정안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대안이 원만히 결정되고 광주광역시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계획협회가 이루어지면 본 특위 활동 기간을 사실상 완료할 계획임.